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렇게 바뀌었어요

「축산물의 표시기준」이란 어떤건가요?

「축산물의 표시기준」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 ① 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왜 필요한가요?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산물이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1. 축산물가공품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 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수입축산물)중 축산물가공품

2. 1회 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조 항	내 용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표시사항) 제5조 (표시방법) 제6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7조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8조 (중량 등의 허용오차)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부칙	고시의 시행일, 경과조치 등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1. 축산물의 일반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관련 ■ 축산물가공품(포장육 및 수입축산물 포함)의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 ■ 소재지, 제조년월일(제조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조사처리 축산물 등 기타 표시 사항의 표시방법과 식용란에 대한 일반표시 기준
[별표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제8조(중량 등의 허용오차) 관련
[표 1] 한국인 1일 영양권장량 [표 2] 영양소 기준치 [표 3] 영양표시서식도안	영양성분의 표시에 활용

-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및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기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05.9.23)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 표시개선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만드는 포장육

4.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그릇 또는 용기에 포장한 식용란으로서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용란

어떠한 사항을 표시해야 하나요?

- 제품명
-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기준에는 원재료로 사용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제수를 제외하고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또는 성분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는 복합원재료의 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총 중량비율이 5%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합원재료란 무엇인가요?

복합원재료란 그 자체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로 제조·가공되어 축산물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축산물가공품 중 원재료의 함량표시 확대
-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표시면에서 특정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께 그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 제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때
- 원재료명 표시란을 제외하고 주표시면에서 특정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한 때

-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축산물 중 국민 다소비 식품(조제우유,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우유,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소시지류)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과 주표시면이 30cm²이하인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축산물이 아니더라도 영양성분,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기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방법대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의 표시 개선

-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식육의 부위명 표시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 고시)”을 준용합니다.

전문참조 :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농림자료실 □ 농림법령 □ 고시/공고

-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경우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원료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명으로 사용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에 대한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함유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만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 강화
- 조사처리 축산물의 경우 조사도안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란에 “조사처리된 000”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용란에 대한 권장 표시기준 마련
- 제품명, 생산농장(또는 포장시설)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영양성

분, 기타표시 사항 등

기타 개정내용을 포함한 「축산물의 표기기준」 전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표시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된 「축산물의 표기기준」은 고시일인 2005.9.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원재료 또는 성분 표시 의무화에 관한 규정([별표1] 제1호 가목(8)(가))과 영양성분의 의무표시 대상 축산물에 관한 규정([별표1]제1호 가목(10)(가)1및2))은 2007.1.1부터 시행됩니다.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2006.10.1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습니다.

